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Global Non Tariff Barriers Issue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허용 유통기한 및 유통기한 라벨 표기 요건 규정



부패하기 쉬운 식품, 식품별 최대 허용 유통기한 설정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은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고 특정 보관 조건을 갖춘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최대 허용 유통기한과 일반 식품의 유통기한 라벨 표기 요건을 지정하여 발표함.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우유, 달걀, 고기, 닭고기, 생선, 갑각류 또는 이를 사용한 식품을 의미하며, 육류 8종과 어류 6종, 우유 및 유제품 11종, 기타 2종의 최대 허용 유통기한을 규정함

예)

- (1) 적절한 포장 상태의 훈제 생선 : 최대 허용 유통기한 14일
- (2) 적절한 포장 상태의 저온 살균 우유 : 최대 허용 유통기한 21일

해당 규정은 명시된 식품이 부패하며 발생하는 식중독과 미생물의 번식으로 발생하는 식품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임. 따라서 한국산 육류, 어패류, 유제품 등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식품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일반 식품의 유통기한 라벨 표기 주요 사항

해당 규정에서 지정한 일반 식품의 유통기한 라벨 표기 주요 사항은 하기와 같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1. 식품 포장에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함
 - 단, 유통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은 생산 일자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식품의 경우 (일-월-년)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의 경우 (월-년 또는 일-월-년)
 - 만료일을 표시할 경우 ‘(유통기한)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유통기한) 이전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2.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을 월과 연도로만 표기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생산한 달의 시작일부터 유통기한에 기록된 달의 말일까지 계산됨
3. 유통기한 또는 생산 일자의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각인, 양각, 인쇄 또는 스탬프로
제품 포장에 직접 표시하거나 처음부터 지정된 표기 구역에 표시해야 함. 또한, 일반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에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읽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함
4. 생산 일자를 표기한 경우, 제품이 실제 생산된 날짜는 이 규정에서 정의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미래 날짜를 표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5.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이 있는 추가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하나의 포장에 생산 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두 개 이상이면 안 되며, 두 날짜 중 어느 것도 삭제,
변경 또는 변조되어서는 안됨
6. 재포장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거래되지 않은 제품일 때 표기되었던 포함 재료의 유통기한을
초과하면 안됨
7. 포장을 개봉하였을 때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장을 개봉한 후 지정된 유통기한 동안
제품이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함
8. 해당 기술 규정에 언급된 식품(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유통기한 만료 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다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당국에
승인 요청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
9. 식품의 최대 허용 만료일
 -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을 명시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설정된 기간 동안
제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 포장, 운송 및 보관은 명시된 최대 허용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련 당국은 설정된 기간 동안 과학적 정당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 해당 규정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식품 및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은 허용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조업체가 결정하며, 제조 공장은 설정된 기간 동안 소비에 대한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장함

출처

E-ping alert, Expiration dates for food products – Part 1 : Mandatory expiration dates, 2020.09.23